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요양지원 등의 수급 여부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확인조사 시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아닌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87호, 2025. 1. 21. 공포, 2025. 4.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호, 2025. 0. 00. 공포, 2025. 4.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서식을 정비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부양의무자의”를 “가구원의”로, “부양의무자가”를 “가구원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부양의무자”를 각각 “가구원”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6호 및 제7호 중 “부양의무자”를 각각 “가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부양의무자”를 “그 가구원”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부양의무자가”를 “그 가구원이”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부양의무자”를 각각 “가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부양의무자”를 “그 가구원”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부양의무자가”를 “그 가구원이”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3서식 제출란에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를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로 하고, 주석란의 1) 중 “부양의무자”를 “가구원”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4서식, 별지 제6호의5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을 각각 별

지와 같이 한다.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illegible]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생계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Γ_{F}
 $\Gamma_{\text{H}_2\text{O}}$
 Γ_{O}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등본 상 같은 세대 거주자를 의미하며, 같은 세대가 아니더라도 배우자, 30세 미만 미혼자녀, 단순 세대 분리자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사람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1. 본인 및 그 가구원 에 대한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1부 2. 본인 및 그 가구원 에 대한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4. 장애인증명서 5. 임야대장 6. 토지대장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9. 건축물대장 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1. 주택가격확인서 12. 선박원부 13. 자동차등록원부 14. 사업자등록증명 15. 임대사업자등록증 16. 휴업사실증명	17. 폐업사실증명 18. 소득금액증명 19. 납세사실증명 20. 납세증명서 21.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22. 공무원연금내역서 23.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2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2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7. 임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 28. 자동차등록증 29. 자활근로자확인서 30.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확인서 31. 차상위계층확인서
본인정보 제공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이 사무를 처리하기를 동의하는 항목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1. 본인(신청인 및 그 **가구원** 각각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법정대리인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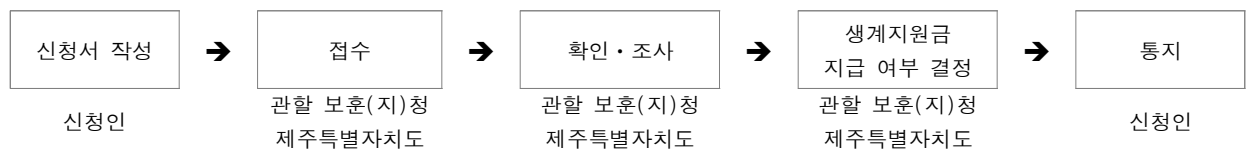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지원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합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은 소득 및 재산사항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신청인	구분	신청인의 보훈번호	성명
	[] 사망자 [] 행방불명자		
	[] 부상자 [] 그 밖의 희생자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에 동의하는 경우 ¹⁾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음 ²⁾	
					통보하지 않음에 동의하는 경우 (서명 또는 인)	통보를 원하는 경우 (주소 및 전화번호)
동의인 (신청인 및 가구원)			-			
			-			
			-			
			-			
			-			
			-			
			-			
			-			

정보제공 목적	[] 교육지원 대상자 선정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2항·제12조의5·제84조의2제2항·제89조제3항·제8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50조의2제2항·제53조·제5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8조의2제1항·제28조의3제1항·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신청인 및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금융회사 등의 장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귀하

1)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하여 금융회사 등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신청인 및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란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2) 금융회사 등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금융정보 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란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통보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란에 통보받을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습니다(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회사 등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대상 금융회사 등의 명칭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뒤쪽 참조

4) 정보제공 목적: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

< 금융회사 등의 명칭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 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유의사항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청인이나 그 **가구원**이 해당 지원 대상자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해당 지원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제3항·제84조의2제2항, 제89조제3항, 제89조의2제4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4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상구분	☐ 사망자 ☐ 행방불명자 ☐ 부상자 ☒ 그 밖의 희생자		보훈번호	성명		
	5·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가구원 ¹⁾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연령	거주지	직업	연락처	동거 여부
보호상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장기요양 급여 판정 내용	장기요양등급(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판정 내용)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장기요양 급여내용	요양급여의 종류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전화번호	
	☐ 재가급여 ☐ 시설급여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등본 상 같은 세대 거주자를 의미하며, 같은 세대가 아니더라도 배우자, 30세 미만 미혼자녀, 단순 세대 분리자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사람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4.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 사본 1부 5.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1부 6.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증명서 4. 장애인증명서 5. 임야대장 6. 토지대장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9. 건축물대장 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1. 주택가격확인서 12. 선박원부 13. 자동차등록원부	14. 사업자등록증명 15. 임대사업자등록증 16. 휴업사실증명 17. 폐업사실증명 18. 소득금액증명 19. 납세사실증명 20. 납세증명서 21.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22. 공무원연금내역서 23.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2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2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본인정보 제공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이 사무를 처리하기를 동의하는 경우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 동의서

- [] 1. 본인(신청인 및 그 가구원 각각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정보요구 대상기관: 법원행정처).
-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법정대리인 성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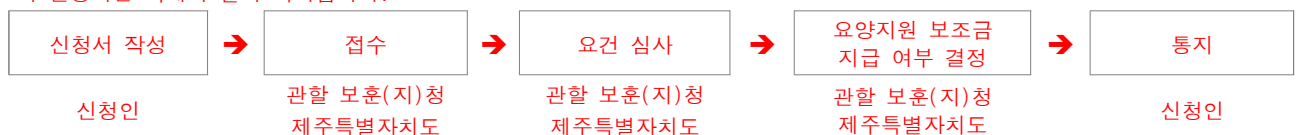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국가보훈부장관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제3항 및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보조금 수급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보조금 지급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조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은 소득 및 재산사항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상구분	[] 사망자 [] 부상자	[] 행방불명자 [] 그 밖의 희생자	보훈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가구원 ¹⁾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연령	거주지	직업	연락처	동거 여부

아파트 신청	신청종류	[] 분양아파트 [] 임대아파트 [] 영구임대아파트		
	희망지역	면적	[] 전용 60㎡ 이하 [] 전용 60㎡ 초과	

주거상황	거주실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무주택기간	년 월 (세대원 명)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 우선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등본 상 같은 세대 거주자를 의미하며, 같은 세대가 아니더라도 배우자, 30세 미만 미혼자녀, 단순 세대 분리자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사람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1. 무주택증명서류(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1부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1부 3.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4. 장애인증명서 5. 임야대장 6. 토지대장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9. 건축물대장 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1. 주택가격확인서 12. 선박원부 13. 자동차등록원부	14. 사업자등록증명 15. 임대사업자등록증 16. 휴업사실증명 17. 폐업사실증명 18. 소득금액증명 19. 납세사실증명 20. 납세증명서 21.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22. 공무원연금내역서 23.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2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2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본인정보 제공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이 사무를 처리하기를 동의하는 경우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법원행정처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 동의서

- [] 1. 본인(신청인 및 그 가구원 각각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정보요구 대상기관: 법원행정처).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법정대리인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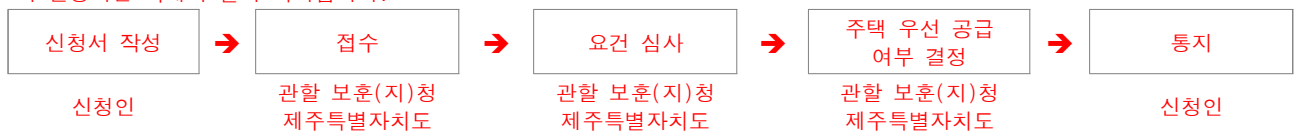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국가보훈부장관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제3항 및 제89조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 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각하하거나 중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보안을 하지 않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급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3제3항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여부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은 소득 및 재산사항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① 영 제8조의4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 <u>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u> ”라 한다)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및 그 <u>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3에 따른 서류를 확인</u> 해야 하며,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또는 그 <u>부양의무자가</u>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의2(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① ----- ----- ----- ----- ----- ----- ----- ----- ----- ----- ----- ----- <u>가구원의</u> ----- ----- ----- ----- ----- ----- <u>가구원</u> <u>의</u> ----- ----- ----- -----
1. 본인 및 그 <u>부양의무자</u> 에 대한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1부	1. ----- <u>가구원</u> ----- ----- -----
2. 본인 및 그 <u>부양의무자</u> 에 대한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금융	2. ----- <u>가구원</u> ----- -----

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① 영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의2(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① ----- ----- ----- ----- -----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본인 및 그 <u>부양의무자</u> 에 대한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6. ----- <u>가구원</u> ----- ----- -----
7. 본인 및 그 <u>부양의무자</u> 에 대한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7. ----- <u>가구원</u> -----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u>부양</u>	② ----- ----- ----- ----- ----- ----- ----- <u>그가</u>

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3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
다. 다만, 보조금 수급희망자 또
는 부양의무자가 확인에 동의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
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0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신
청) ① 법 제12조의3제3항 및
영 제12조의2에 따라 주택의 우
선 공급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 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
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
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생략)

2.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
한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소득
· 재산 신고서 1통

3.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
한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원

---.

-- 그 가구원이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신
청) ① -----

-----.

1. (현행과 같음)

2. ----- 가구원-----

3. ----- 가구원-----

4. (현행과 같음)

② -----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택공급 희망자 및 <u>부양의무자</u>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3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공급 희망자 및 <u>부양의무자가</u>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③ (생략)	----- ----- ----- ----- <u>그 가구원</u>----- <u>원</u>----- ----- ---. ----- <u>그 가구원이</u> ----- ----- -----. ③ (현행과 같음)
---	---